

평창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용도구역)결정(변경)을 위한
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

검 토 보 고 서

평 창 군 의 회

전문위원 장동기

평창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용도구역)결정(변경)을 위한
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6. 10, 평창군수
- 회부일자 : 2011. 6. 27(월)
- 상정일자 : 2011. 6. 27(월) 제17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. 1. 1일부터 시행된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을 근거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2008년 3월 13일 승인된 “2020년 평창군기본계획”의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발전방향 수용과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『선계획-후개발』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8조, 제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을 강원도고시 제2008-17호(2009. 1. 23)로 완료 하였음
- 금회 변경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·변경으로 보전산지에서 추가 해제된 지역(준보전산지 : 관리지역)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(관리지역)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 등에 따른 추가 세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체계적·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·생산·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 하는 사항임.

3. 주요골자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40.352km²
 - (관리지역 세분 40.158km², 농림지역 0.194km²)
 - 미세분 관리지역 : 15.346km²
 - 타법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변경 : 20.348km²
 - 보전산지 해제지역 : 5.640km²
 -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: 14.708km²
 - 자연환경보전지역(수산자원보호구역 폐지) : 0.499km²
 - 사유지로서 대지, 전, 답 및 준보전산지 지역 : 0.496km²
 - 보전산지 지역 : 0.003km²
 - 자연환경보전지역(오대산국립공원 일부해제) : 0.281km²
 - 사유지로서 대지, 전, 답 및 준보전산지 지역 : 0.090km²
 - 보전산지 지역 : 0.191km²
 - 토지적성평가 지침변경 : 3.557km²
 - 임상도(4영급 → 5영급) 기준변경 : 1.727km²
 - 하천양안 300m ~ 500m 구간
 - (평창강 주변:대화면 하안미 ~ 평창읍 대하리) : 1.802km²
 - 저수지양안 300m ~ 500m 구간(도암댐 주변) : 0.028km²
 -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: 0.319km²
 -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: 0.018km²
 - 용평생활체육시설 예정부지 : 0.045km²
 - 공동주택 사업대상지 : 0.013km²
 - 기타 : 0.243km²
- 용도구역 결정(변경) 1건 (폐지1건)
 - 미탄 수산자원보호구역 폐지 : 0.370km²

4. 검토결과

- 금회 변경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·변경으로 보전산지에서 추가 해제된 지역(준보전산지 : 관리지역)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(관리지역)과
-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 등에 따른 추가 세분이 필요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체계적·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·생산·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- 다만, 군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져 주민들의 재산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주민의견 청취, 설명회 등 홍보대책을 수립해 많이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